



## 선행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 1.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지도하는 행위 (‘앞서는’ 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지도하는 행위

### 2. 선행학습이란?

-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 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 3.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 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 (법 제8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 (시행령 제3조) 입학 예정 학생 대상
  -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조, 제12조)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 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설치·운영
- (법 14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의결 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2024. 4. 18.

전 주 전 라 초 등 학 교